

태화강 에피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7-025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울산광역시 거주자	10년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05.09.)부터 1년 (현재 전매 가능)	없음	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9.15.(화)	2026.09.28.(월)	2026.10.06.(화)	2026.10.07.(수)	2026.10.16.(금)

1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전시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주'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and.hldni.com/taehwagang>)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9.15.(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30032**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8.(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107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9.28.(월)	2026.10.06.(화)	2026.10.07.(수)	2026.10.16.(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계약장소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79, 1층)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배우자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05.09.)**부터 1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택과 -33247호(2026.9.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공공주택지구 내 S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최고 15층 5개동 총 307세대 중 불법행위재공급 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6930032	01	084.7646	84	084.7646	24.5123	109.2769	47.8533	157.1302	61.2209	1	1
	합 계									1	1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약식 표기	동호수	분양가격			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추가 부대경비		계약 시	1차	2차	입주예정일
							2026.11.16	2026.12.15	
84	104동 1002호	167,041,160	376,358,840	4,400,000	547,800,000	58,740,000	271,700,000	54,340,000	163,02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에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주택과의 분양가격 확인을 받아 책정한 금액입니다.
-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 거부 시 계약 불가 / 기존 계약의 추가 선택품목 외 추가선택 불가)
- ※ 본 공급세대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므로 마이너스옵션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 불법행위재공급 세대의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동호수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6.12.15	입주예정일
84	104동 1002호	발코니확장	-	4,538,000	453,800	453,800	3,630,400

(단위 : 원 / VAT포함)

약식 표기	동호수	품목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6.12.15	입주예정일
84	104동 1002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고급형) [LG]	거실+침실12,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전기쿡탑	LG 3구 인덕션(BEI3ASB4BI)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전기오븐	LG (MZ385EBTA)	480,000	48,000	48,000	384,000
		식기세척기	LG (DIE5PT)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냉장고 Set	LG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3AA)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욕실특화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일체형양변기, 세면대, 수전류(욕실1,2)]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조명스타일업(신발장하부간접등)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아트월 마감특화 - 선택3	알파룸 특화 선택시 복도 시트판넬 마감(84만 해당)	600,000	60,000	60,000	480,000
		아트월 마감특화 - 선택5	조명스타일업(거실D/L, 거실간접등(간접 등박스포함), 커튼박스 간접등, 복도D/L)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주방 스타일업 특화 - 선택2	알파룸특화 선택시 주방상판/벽 세라믹타일+아일랜드하부장+사각싱크볼+터치식수전+메탈PET가구마감 + 저소음독립후드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알파룸 특화 - 선택1	주방장식장+주방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선반)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수납 특화 - 선택1	현관 수납특화	500,000	50,000	50,000	400,000
		합계		33,880,000	3,388,000	3,388,000	27,104,000

-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거부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 추가 선택품목의 세부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및 발코니,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농협	355-0092-7802-33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발코니 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355-0092-7806-83	
추가 선택품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741071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4동 1002호 계약자 → '1041002홍길동')
-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장소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장소에서 현금수납 불가)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 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공동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적용된 분양가 산정자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세부내역			비 고
	항 목	근 거	금 액	
아파트	대지비	2025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167,041,160	
	건축비		376,358,840	
	부가가치세		-	
	소 계		543,400,000	
발코니	발코니 확장 비용	2025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4,538,000	
추가 선택품목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2025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7,900,000	(고급형) [LG] 거실+침실1,2,3 : 7,900,000
	가전기기		8,380,000	전기쿡탑 : 1,200,000 전기오븐 : 480,000 식기세척기 : 1,200,000 냉장고 SET : 5,500,000
	인테리어		13,300,000	현관중문 : 1,700,000 아트월 마감특화 - 선택3 : 600,000 아트월 마감특화 - 선택5 : 2,200,000 주방 스타일업 특화 - 선택2 : 5,300,000 알파룸 특화 - 선택1 : 3,000,000 수납 특화 - 선택1 : 500,000
	설비/전기		4,300,000	욕실특화 : 4,300,000
	재분양 비용		4,400,000	분양광고 비용 및 실비금액
총 액			586,218,000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0.06.(화) ~ 2026.10.15.(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0.06.(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 입주자 포함)	○		서약서	본인	• 계약장소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세대주와의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한 해외체류여부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반드시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및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계약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대리인 위임용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인감도장		• 날인용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당첨사실 소명자료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장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1통 필요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6.10.16.(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79, 1층

-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 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등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사무실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 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청약자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 상기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 **정당 계약자의 계약 체결일 이후 잔여세대 발생 시 선 순위부터 안내 예정이며, 선 순위 계약 완료 시 후 순위에게는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당첨자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당첨자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즉시 계약(추후 통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추가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 유의사항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5.04.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 참가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 실행 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 계획 등 고려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5.04.18.)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5.04.18.) X. 유의사항(창호)에 “각 세대 거실 및 안방 발코니 외부 창호는 유리 난간 일체형 창호가 설치되며”로 오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업 승인 및 입주자 모집공고시 울주군에 제출한 사업승인 설계도서 등에는 “각 세대 거실, 침실 및 발코니 등 외부 창호에 철제 난간설치”로 신고되어 있는 사항임을 정정 안내드립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tr><th>조항</th><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th>주거전용면적</th><th>수도권</th><th>비수도권</th></tr><tr><td>제53조제9호가목</td><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td>60㎡ 이하</td><td>1억 6천만원</td><td>1억원</td></tr><tr><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td>단독주택</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5억원</td><td rowspan="3">3억원</td></tr><tr><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tr><tr><td>도시형 생활주택</td></tr></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기물보관시설, 공용창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샤워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호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2.7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내진능력 (MMI 등급)
내진능력 (MMI 등급)	VII-0.257g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울산태화강변S1 공동주택
- 신 청 자 : 에이치엘디엔아이와 주식회사
-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포로 2829-12, 공동주택지구 S1블록
-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충격을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자음성능	★★
4. 도	★
5. 화상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기밀성	★★★
3. 수리용이성 전물부분	★★★
4. 수리용이성 공물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파개발 지양	-
3. 도시상 질서·생태환경(방기·출입기 등) 최소화	-
4. 밀집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소비량 및 관리편리 정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화 기술의 적용	★
9.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특성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신변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을 한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률 달성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우수저지 우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색 건축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류)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정의 적용	★★★
25. 실내 환기성능 확보	★
26. 단열시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리.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진가차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근접한 편의 시설의 계획	★★★★
6. 문명·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10. 생활공간내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밀집 확보	★★
13. 홀대트릭스 종합시스템	★★★
14. 방범방탄 콘크리트	★★★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설비	★
4. 수평피난기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화재·소방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크레비즈인증원장

Crebiz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27 7층 TEL (02)2069-3612 / FAX (02)2069-3629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울산태화강변S1 공동주택	인증번호 : G-SEED-P-2024-1142-1
건축주 : 에이치엘디엔아이와 주식회사	인증기관 : 크레비즈인증원
준공(예정)일 : 2027년 7월 2일	유효기간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인 날까지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울포로 2829-12, 공동주택지구 S1블록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5층	
연 면 적 : 50,312.4024㎡ (307세대) (평가면적 50,188.9024㎡)	
건축물 용도 : 주거(공동주택)	
설 계 자 : ㈜에이비이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일반등급(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 07. 03.)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구분	비율
(1) 기본요건 및 서류	34%
에너지 및 환경영향	58%
자료 및 자재	73%
물환경관리	21%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7%
실내환경	52%

2024년 12월 16일

크레비즈인증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1700호	121,796,563,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주식회사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하일기술단	(주)천아엔지니어링	(주)유원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504,690,000	442,241,720	69,629,553	231,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상호명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0274699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89(신천동)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 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 홈페이지 : (<https://brand.hldni.com/taehwagang/>)

■ 분양문의 : ☎ 052-257-0255